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57
----------	------

제출년월일 : 2010. 6.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대부 신청 수수료의 징수근거 마련(안 별표3)

□ 참고자료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구분란 중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제7호 다음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준	요액
8.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가) 신규	1건	5,000원
(나) 연장	1건	3,0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 기타 제증명 등 수수료			【별표3】 기타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	기준	요액	구 분	기준	요액
<인가·허가·신고·신청· 등록·지정·확인 등> 8. <신설> (1) <신설> (가) <신설> (나) <신설>			<인가·허가·신고·신청· 등록·지정·확인 등> 8.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가) 신규 (나) 연장	1건 1건	5,000원 3,000원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련법령	<p>□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p> <p>□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40px;">「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없음”
관련자료	“해당없음”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2조 관련)

종 류	금 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 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주택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 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주택당 8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신규) 신청수수료	1건당 5,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연장) 신청수수료	1건당 3,000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 증명수수료	1통당 1,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수수료	1건당 20,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수수료	1건당 30,000원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수수료	1건당 40,000원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수수료	1건당 20,000원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수수료	1건당 100,000원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고수수료	1건당 4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 시설업 신고수수료	1건당 3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 시설업 변경신고수수료	1건당 10,000원